# 모아엘가 더 수완 입주자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9.07.18.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18.)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5항 및「광주광역시고시」제2019-156호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거주(2018.07.18. 이전부터 계속거주)한 신청자가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 및 전라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호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 · 모, 장인 · 장모, 시부 · 시모, 조부 · 조모, 외조부 · 외조모 등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 · 딸, 사위 · 며느리, 손자 · 손녀, 외손자 · 외손녀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보며, 단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의2호,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봅니다.)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의3호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 · 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 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기관추천 특별공급 거주 요건 명확화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합니다. (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 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형 85㎡이하 주택은 2018.09.18.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2항에 의거 가점제 40%가 적용됩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2년이내 가점제 적용 : 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의적으로 매각하지 않은 경우는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http://thesuwan.moaelgaa.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 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은「주택법」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제73조 규정에 의거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동주택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7.01.20. 시행)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에 대하여 그 실제 거래가격(공동주택 공급가액, 발코니 확장 금액 등 옵션비용)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급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외국인 계약을 포함)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당 단지 입주세대의 통학학교(군)는 신가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7학교군임. ■ 해당 사업지의 학생들은 신가재개발 정비 사업중 철거·착공기간에는 진만초로 임시배치 할 예정이며 신가초 재배치 및 신가재개발 정비 사업 준공 완료 후 신가초 재개교에 맞춰 신가초로 학생배치 예정. ■ 신가초 재배치 및 신가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 준공까지 통학버스 운행예정.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초등학교 : 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seobu.gen.go.kr/)/ 행정정보마당/ 공지사항/ '통학구역 결정고시' 참조 ■ 중학교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en.go.kr/)/ 알림마당/ 공지사항/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참조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구분 |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발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
| 일정 | 2019.07.23일 (화) | 2019.07.24일 (수) | 2019.07.25일 (목) | 2019.07.31일 (수) | 2019.08.01일 (목)~<br>2019.08.10일 (토) | 2019.08.12일 (월)~<br>2019.08.14일 (수) |
| 방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www.apt2you.com 로그인후 조회 가능) | 방문제출 ( 10:00 ~ 16:00 ) | 방문계약 |
| 장소 | ■ 금융결제원 (www.apt2you.com)<br>*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br>*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 에서만 가능 | ■ 금융결제원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br>- PC : www.apt2you.com<br>- 스마트폰 : APT2you 앱<br>■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br>- PC : www.kbstar.com<br>-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앱 | | ■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 홈페이지<br>■ 금융결제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br>- PC : www.apt2you.com<br>- 스마트폰 : APT2you 앱 | 당사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05, 모아주택전시관 2층) | 당사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05, 모아주택전시관 2층)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모바일 서비스(2018.05.25. 접수분부터 적용)가 실시되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2018.09.1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주택과 - 18257호 (2019.07.18.) 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가동 산110번지 외 172필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1층, 지상 29층 8개동 총 567세대 중 일반공급 567세대**
**[특별공급 240세대(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55세대, 다자녀가구특별공급 58세대, 신혼부부특별공급 109세대,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2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 주택구분 |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세대별 계약면적(㎡) | | | | | 세대별 대지지분 | 총 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일반분양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세대별 공급면적(㎡) | |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 계약면적 | |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계 | | |
| | |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 | | | | | | | | | |
| 민영주택 | 2019000668-01 | 84.9831A | 84A | 84.9831 | 24.6731 | 109.6562 | 40.1680 | 149.8242 | 53.9389 | 387 | 39 | 39 | 78 | 12 | 168 | 219 | 18 |
| | 2019000668-02 | 84.9836B | 84B | 84.9836 | 26.2791 | 111.2627 | 40.1682 | 151.4309 | 53.9392 | 153 | 16 | 16 | 31 | 5 | 68 | 85 | 7 |
| | 2019000668-03 | 104.9737 | 104 | 104.9737 | 25.6434 | 130.6171 | 49.6166 | 180.2337 | 66.6270 | 27 | 0 | 3 | 0 | 1 | 4 | 23 | 2 |
| 합계 | | | | | | | | | | 567 | 55 | 58 | 109 | 18 | 240 | 327 | 27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시 확정측량 실시 후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주거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주택형 | 공급세대수 | 동별 (라인별) | 층구분 | 해당세대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 (10%) | 중도금(60%) | | | | | | 잔금 (30%)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가치세 | 계 | 계약 체결시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 | | | | | | | | | | 2019.11.20 | 2020.05.20 | 2020.11.20 | 2021.04.20 | 2021.09.20 | 2022.02.20 | 입주지정기간 |
| 84A | 387 | 101동 (1,2,4호)<br>102동 (1,2,4호)<br>103동 (1,3호)<br>104동 (1,2,4호)<br>105동 (1,2,4호)<br>106동 (1,3호)<br>107동 (1,3호) | 2층 | 17 | 126,196,000 | 298,604,000 | - | 424,800,000 | 42,480,000 | 42,480,000 | 42,480,000 | 42,480,000 | 42,480,000 | 42,480,000 | 42,480,000 | 127,440,000 |
| | | | 3층 | 18 | 126,196,000 | 308,604,000 | - | 434,800,000 | 43,480,000 | 43,480,000 | 43,480,000 | 43,480,000 | 43,480,000 | 43,480,000 | 43,480,000 | 130,440,000 |
| | | | 4층 | 18 | 126,196,000 | 312,604,000 | - | 438,800,000 | 43,880,000 | 43,880,000 | 43,880,000 | 43,880,000 | 43,880,000 | 43,880,000 | 43,880,000 | 131,640,000 |
| | | | 5층~9층 | 90 | 126,196,000 | 315,604,000 | - | 441,800,000 | 44,180,000 | 44,180,000 | 44,180,000 | 44,180,000 | 44,180,000 | 44,180,000 | 44,180,000 | 132,540,000 |
| | | | 10층 이상 | 244 | 126,196,000 | 320,604,000 | - | 446,800,000 | 44,680,000 | 44,680,000 | 44,680,000 | 44,680,000 | 44,680,000 | 44,680,000 | 44,680,000 | 134,040,000 |
| 84B | 153 | 101동 (3호)<br>102동 (3호)<br>103동 (2호)<br>104동 (3호)<br>105동 (3호)<br>106동 (2호)<br>107동 (2호) | 2층 | 7 | 126,197,000 | 298,603,000 | - | 424,800,000 | 42,480,000 | 42,480,000 | 42,480,000 | 42,480,000 | 42,480,000 | 42,480,000 | 42,480,000 | 127,440,000 |
| | | | 3층 | 7 | 126,197,000 | 308,603,000 | - | 434,800,000 | 43,480,000 | 43,480,000 | 43,480,000 | 43,480,000 | 43,480,000 | 43,480,000 | 43,480,000 | 130,440,000 |
| | | | 4층 | 7 | 126,197,000 | 312,603,000 | - | 438,800,000 | 43,880,000 | 43,880,000 | 43,880,000 | 43,880,000 | 43,880,000 | 43,880,000 | 43,880,000 | 131,640,000 |
| | | | 5층~9층 | 35 | 126,197,000 | 315,603,000 | - | 441,800,000 | 44,180,000 | 44,180,000 | 44,180,000 | 44,180,000 | 44,180,000 | 44,180,000 | 44,180,000 | 132,540,000 |
| | | | 10층 이상 | 97 | 126,197,000 | 320,603,000 | - | 446,800,000 | 44,680,000 | 44,680,000 | 44,680,000 | 44,680,000 | 44,680,000 | 44,680,000 | 44,680,000 | 134,040,000 |
| 104 | 27 | 108동 (1,2호) | 2층 | 1 | 155,881,000 | 370,617,273 | 37,061,727 | 563,560,000 | 56,356,000 | 56,356,000 | 56,356,000 | 56,356,000 | 56,356,000 | 56,356,000 | 56,356,000 | 169,068,000 |
| | | | 3층 | 2 | 155,881,000 | 379,708,182 | 37,970,818 | 573,560,000 | 57,356,000 | 57,356,000 | 57,356,000 | 57,356,000 | 57,356,000 | 57,356,000 | 57,356,000 | 172,068,000 |
| | | | 4층 | 2 | 155,881,000 | 383,344,545 | 38,334,455 | 577,560,000 | 57,756,000 | 57,756,000 | 57,756,000 | 57,756,000 | 57,756,000 | 57,756,000 | 57,756,000 | 173,268,000 |
| | | | 5층~9층 | 10 | 155,881,000 | 386,071,818 | 38,607,182 | 580,560,000 | 58,056,000 | 58,056,000 | 58,056,000 | 58,056,000 | 58,056,000 | 58,056,000 | 58,056,000 | 174,168,000 |
| | | | 10층 이상 | 12 | 155,881,000 | 390,617,273 | 39,061,727 | 585,560,000 | 58,556,000 | 58,556,000 | 58,556,000 | 58,556,000 | 58,556,000 | 58,556,000 | 58,556,000 | 175,668,000 |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 별도 계약품목(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 선택 옵션금액)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납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선자는 상기 납부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잔금 납부일(입주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잔금 및 일체의 납부비용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조세(종합토지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정산할 예정입니다.(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분 | | | 84A | 84B | 104 | 합계 |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0% 범위) | 장애인 | 광주광역시 | 9 | 5 | 0 | 14 |
| | | 전라남도 | 4 | 2 | 0 | 6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9 | 3 | 0 | 12 |
| | 중소기업 근로자 | | 9 | 3 | 0 | 12 |
| | 국가유공자 | | 8 | 3 | 0 | 11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 범위) | - | | 39 | 16 | 3 | 58 |
| 신혼부부 특별공급 (20% 범위)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59 | 24 | 0 | 83 |
| | | 일반공급(25%) | 19 | 7 | 0 | 26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범위) | - | | 12 | 5 | 1 | 18 |
| 합 계 | | | 156 | 63 | 3 | 222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1)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2)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6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4)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 구분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000만원 |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구분 | 신청자격 | 당첨자 선정방법 |
|---|---|---|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자.(단,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br>·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단,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제외)<br>※ 추천기관<br>① 장애인 : 광주광역시 장애인 복지과<br>②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br>③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광주지방보훈청<br>④ 중소기업 근로자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br>·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대상자(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신청하여야 하며, 노약자 · 인터넷 취약자만 견본주택 방문신청 가능함[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 및 계약 불가]<br>·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인터넷 특별공급 접수기관(금융결제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함.<br>· 기관에서 선정한 예비추천자는 특별공급 추가당첨(접수미달 주택형 한정) 또는 통합 예비입주자로의 확정은 아니며, 특별공급 추가당첨 또는 통합예비입주자 추첨대상에 포함되어 사업주체 추첨결과에 따라 추가당첨자 및 통합 예비입주자로 선정 또는 낙첨될 수 있음.<br>· 당첨자 선정기준 : 유형별 배정세대수 내에서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 지역(광주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입양자녀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br>·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 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br>-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에는 출산, 입양관계증명서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됨)<br>- 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포함하고,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전혼 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함.<br>-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름.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br>·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br>(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br>(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한다.) 이하인 자<br>·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br>-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함.<br>- 임신의 경우 청약신청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br>-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우선공급 소득대상자는 100% 이하)<br>-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br>*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br>- 기타 자세한 사항은「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 련 법령에 의함.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함.<br>· 선정기준 : 우선공급(소득기준) → 공급순위 → 거주지역 → 자녀수.<br>·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br>(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br>(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br>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br>·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br>(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br>(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br>(3)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br>※ 상기 미성년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이 경우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를 말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단,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함. |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br>· 청약자격요건<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br>※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br>※「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br>※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br>※ 기타 자세한 사항은「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br>(1)「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br>(2)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br>※ 가점제 점수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의 청약가점산정 기준표로 산정함.<br>※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 후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관련된 전화문의는 일체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자(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선정, 발표 및 동·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입주자선정과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합니다.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br>*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전체를 해 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의 경우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포함하고,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 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 구분 | 2018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우선공급 (기준소득, 7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5,401,814원 | 6,165,202원 | 6,699,865원 | 7,348,891원 | 7,997,917원 | 8,646,943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6,482,177원 | 7,398,242원 | 8,039,838원 | 8,818,669원 | 9,597,500원 | 10,376,332원 |
| 일반공급 (상위소득, 25%)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초과 ~120% 이하 | 5,401,815원 ~ 6,482,177원 | 6,165,203원 ~ 7,398,242원 | 6,699,866원 ~ 8,039,838원 | 7,348,892원 ~ 8,818,669원 | 7,997,918원 ~ 9,597,500원 | 8,646,944원 ~ 10,376,332원 |
| |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초과 ~130% 이하 | 6,482,178원 ~ 7,022,358원 | 7,398,243원 ~ 8,014,763원 | 8,039,839원 ~ 8,709,825원 | 8,818,670원 ~ 9,553,558원 | 9,597,501원 ~ 10,397,292원 | 10,376,333원 ~ 11,241,026원 |
| - 기준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5%(상위소득)[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30% 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br>- 상위소득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 | | | | |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49,026)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 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세무서 |
| | 신규취업자 |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 해당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무직자 |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 접수장소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동·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APT2you)을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방문접수(견본주택)가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APT2you)의 경우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으며, 방문접수(견본주택)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 모두 예비입주자가 된 경우 특별공급을 우선하여 공급(둘 중 선택 불가)하고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경우 일반공급 예비는 무효 처리하며, 특별공급 예비 물량이 모두 소진되어 예비 추첨기회가 소진된 경우 일반 예비 지위를 인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습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 구분 | 서류유형 |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 |
| 공통 서류 | O |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 접수 장소에 비치<br>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O |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 | O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 | O | | 주민등록증 | 본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 | O |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br>인터넷청약(APT2you)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 O |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O |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 |
| | O |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 한함 |
| 기관추천 (일반) 특별공급 | O |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
| 다자녀 특별공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여성가족부의「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 | O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 | O | | 소득증빙서류 |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 | | O | 기본증명서 |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 | O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비사업자의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 | O | | 인감도장 |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 O |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O | | 주민등록증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 O | | 인장 | 대리인 |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18.)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7.18.)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동일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주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광주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전라남도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중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니므로,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도 본 주택 청약 가능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됨(2018.01.02. 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순위별 자격요건**

|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 민영주택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1순위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 | · 가점제 40%, 추첨제 60% 적용<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br>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br>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br>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br>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 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br>※ 본 공동주택에 1순위 청약 시 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함.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 | 2순위 | 전 주택형 | · 추첨제 100% 적용<br>·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단, 청약부금의 경우 85㎡ 이하만 청약가능) 및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신청 전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신청 가능 - 청약 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관련, 별표2)

| 구분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
| 전용면적 85㎡ 이하 |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000만원 |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 2019.07.23 (화) (APT2you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APT2you) 특별공급 청약신청은 PC 에서만 가능 |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br>· 사업주체 견본주택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05) |
| 일반공급 | 1순위 | 2019.07.24 (수)(08:00~17:30) | · 인터넷 청약 (APT2you)(PC 또는 스마트폰) | · 금융결제원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br>- PC : www.apt2you.com - 스마트폰 : APT2you 앱<br>·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br>- PC : www.kbstar.com - 스마트폰 : KB스타뱅킹 |
| | 2순위 | 2019.07.25 (목)(08:00~17:30) | |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신청 구비 서류 미비자 접수 불가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과밀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부산, 대구,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우, 인터넷취약자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창구접수시간 : 09:00 ~ 16:00)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 일반공급만 해당 |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br>[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APT2you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아파트투유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APT청약신청」⇒「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일반공급 PC 청약시]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주택청약」⇒「인터넷청약」⇒「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br>[일반공급 스마트폰 청약시] KB스타뱅킹 앱(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KB스타뱅킹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전체메뉴 - 청약/채권 - 신청」⇒「주택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